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

2013년도 자격규정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전	개정후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사 자격규정(개정전)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사 자격규정(개정후)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p>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가족상담사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가족상담사라 함은 본 협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가족상담사의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p> <p>제3조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족상담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상담사에 대한 사회의 점증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특히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가족상담사의 양성 및 배출 2. 대학 및 대학원의 상담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상담현장에서의 임상능력을 갖춘 가족상담사의 양성 3. 가족상담사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임상수련과정과 사후 관리를 통한 상담자의 자질 향상에 기여 4. 국내외 상담분야에서 널리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가족상담사의 사회적 지위보장 및 향상에 기여 5. 상담기관이나 내담자들에게 자격을 갖춘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 	<p>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가족상담사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가족상담사라 함은 본 협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가족상담사의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p> <p>제3조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족상담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상담사에 대한 사회의 점증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특히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가족상담사의 양성 및 배출 2. 대학 및 대학원의 상담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상담현장에서의 임상능력을 갖춘 가족상담사의 양성 3. 가족상담사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임상수련과정과 사후 관리를 통한 상담자의 자질 향상에 기여 4. 국내외 상담분야에서 널리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가족상담사의 사회적 지위보장 및 향상에 기여 5. 상담기관이나 내담자들에게 자격을 갖춘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

제2장 자격 종류 및 규정	제2장 자격 종류 및 규정
<p>제4조 (자격 종류 및 등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2. 가족상담사 1급 3. 가족상담사 2급 4. 가족상담사 3급 <p>제5조 (가족상담사 자격규정) 가족상담사(수련감독, 1급, 2급, 3급)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p>	<p>제4조 (자격 종류 및 등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2. 가족상담사 1급 3. 가족상담사 2급 4. 가족상담사 3급 <p>제5조 (가족상담사 자격규정) 가족상담사(수련감독, 1급, 2급, 3급)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p>
<p>1.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가족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가족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2년 이상 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상담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가족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 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3) 가족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4년 이상 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4) 상담전공 박사 또는 상담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15년 이상 재직된 전임교수로서, 상담분야에서 학문적 혹은 상담실천적 업적이 현저하며,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5)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족상담사 수련감독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 	<p>1.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가족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의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협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가족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5년 이상 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본 협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3) 상담관련학과에서 재직된 전임교수 또는 5년 이상 상담관련과목을 강의한 겸임교수로서,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4)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족상담사 수련감독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p>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2. 가족상담사 1급: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가족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p> <p>1)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재학 또는 수료한 후, 본 협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2)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협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3) 가족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로서, 본 협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4) 국내외에서 가족상담사 1급의 자격 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가족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을 부여 받은 자</p>	<p>2. 가족상담사 1급: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가족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p> <p>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본 협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2) 가족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본 협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로서, 본 협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3) 국내외에서 가족상담사 1급의 자격 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가족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을 부여 받은 자</p>
<p>3. 가족상담사 2급: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가족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p> <p>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2학기 수료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가족상담사(수련감독, 1급)의 감독 하에 6개월 이상 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2)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가족상담사(수련감독, 1급)의 감독 하에 6개월 이상 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3. 가족상담사 2급: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가족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p> <p>1)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본 협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2) 가족상담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본 협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로서 본 협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p>

<p>3) 상담 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상담자 교육을 받고,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가족상담사(수련감독, 1급)의 감독 하에 2년 이상 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4) 가족상담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 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5) 가족상담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상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6개월 이상 가족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3) 가족상담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상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6개월 이상 가족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3. 가족상담사 3급:</p> <p>1) 상담 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2학년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자로서,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상담자 교육을 받고,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가족상담사(수련감독, 1급)의 감독 하에 2년 이상 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상담자 교육을 받고,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가족상담사(수련감독, 1급)의 감독 하에 2년 이상 상담 실무를 경험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3) 가족상담사 3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상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6개월 이상 가족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4. 가족상담사 3급: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가족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p> <p>1) 상담관련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상담교육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본 협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 심사를 통과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2) 가족상담사 3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상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6개월 이상 가족상담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p>
<p>※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수준이라 함은 각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각국 심리학이나 그에 상응하는 학술 및 전문가 단체에서 시행하는 엄격하고 공인된 자</p>	<p>※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수준이라 함은 각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각국 심리학이나 그에 상응하는 학술 및 전문가 단체에서 시행하는 엄격하고 공인된 자</p>

<p>격시험 및 자격 심사를 통과한 수준을 말한다. 제6조 (상담관련학과 규정)</p> <p>1. 상담관련학과: 대학원의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정신의학</p> <p>2. 관련학과 판단 기준:</p> <p>1) 전문대학: 아동상담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p> <p>2) 학부: 심리학과(전공), 상담학과(전공), 교육심리학과(전공)</p> <p>3) 대학원: 상담전공, 심리전공, 상담심리전공, 상담교육전공, 상담심리교육전공, 교육학과의 상담 및 심리전공</p> <p>4)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p>	<p>격시험 및 자격 심사를 통과한 수준을 말한다. 제6조 (상담관련학과 규정)</p> <p>1. 상담관련분야라 함은 학위과정에서 공통과목 필수 영역인 상담이론, 가족상담, 집단상담 3과목과 심리검사 또는 이상심리, 발달심리 또는 성격심리 영역에서 각 1과목씩 2과목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p> <p>2. 가족상담전문가 1급의 경우 공통과목 이외에 가족상담관련 일반과목(4과목: 가족심리이론, 가족치료이론, 가족상담과정, 가족상담기법) 중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p> <p>3.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의 경우 공통과목과 가족상담관련 일반과목 이외에 가족상담관련 심화과목(4과목: 가족문제와 상담, 부모교육, 부부관계와 상담, 배우자 선택과 상담, 이혼상담) 중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p> <p>단, 가족상담관련과목은 협회가 인증하는 가족상담전문가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제7조 (수련)</p> <p>자격취득에 필요한 수련과정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규정한다.</p>	<p>제7조 (수련)</p> <p>자격취득에 필요한 수련과정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장 자격시험 및 심사</p> <p>제 8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은 본회에서 인정하는 학력의 영역과 교육의 영역에 대한 서류 확인 후 응시할 수 있다.</p> <p>제 9조(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임상서류검정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p> <p>1. 가족상담사(수련감독)</p> <p>1) 필기시험</p> <p>2) 서류심사</p> <p>3) 면접시험</p> <p>2. 가족상담사 1급</p> <p>1) 상담의 이론과 실제</p> <p>2) 가족상담</p> <p>3) 인간발달</p> <p>4) 가정법률</p> <p>5) 부부상담</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장 자격시험 및 심사</p> <p>제 8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은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학력과 교육의 영역에 대한 서류 확인 후 응시할 수 있다.</p> <p>제 9조(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임상서류검정,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p> <p>1.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p> <p>1) 필기시험</p> <p>2) 임상서류검정</p> <p>3) 면접시험</p> <p>2. 가족상담전문가 1급</p> <p>1) 필기시험: 가족상담,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인간발달, 부부상담, 가정법률</p> <p>2) 임상서류검정</p> <p>3) 면접시험</p> <p>3. 가족상담사 2급</p>

<p>3. 가족상담사 2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의 이론과 실제 2) 가족상담 3) 인간발달 4) 가정법률 <p>4. 가족상담사 3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상담 또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 2) 가정법률 <p>제10조(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가족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 따른다.</p> <p>제 11조(연수와 수련과정) 가족상담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족상담사의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연수와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p> <p>제 12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 가족상담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무시험 심사대상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협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p> <p>제 13조(시험과목면제) 가족상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상담, 심리상담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기시험: 가족상담,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인간발달, 가정법률 2) 임상서류검정 3) 면접시험 <p>4. 가족상담사 3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기시험: 가족상담, 상담의 이론과 실제, 가정법률 2) 임상서류검정 3) 면접시험 <p>제10조(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가족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 따른다.</p> <p>제11조(연수와 수련과정) 가족상담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족상담사의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연수와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p> <p>제12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 가족상담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무시험 심사대상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협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p> <p>제13조(시험과목면제) 가족상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상담, 심리상담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역할</p> <p>제14조 (가족상담사의 역할) 가족상담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 <p>1.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가족상담의 최고 전문가(지도인력)이며 전문적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현장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2) 상담현장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역할</p> <p>제14조 (가족상담사의 역할) 가족상담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 <p>1.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가족상담의 최고 전문가(지도인력)이며 전문적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현장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2) 상담현장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p>3) 수련중인 가족상담사(1급, 2급)에 대한 교육 및 사례지도</p> <p>4) 수련중인 가족상담사(1급, 2급)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 추천</p> <p>5)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p> <p>6)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p> <p>2. 가족상담사 1급: 상담의 전문가(기간인력)이며 독자적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p>1) 가족상담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p> <p>2) 가족상담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p> <p>3) 해당 전문영역에서 가족상담사 및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p> <p>4)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p> <p>5)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p> <p>3. 가족상담사 2급: 가족상담사 상담의 기본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족상담사(수련감독, 1급)의 지도 하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p> <p>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심리상담을 통한 지도</p> <p>3) 상담 행정 업무</p> <p>3. 가족상담사 3급: 가족상담사 상담의 기본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족상담사(수련감독, 1급)의 지도 하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p> <p>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심리상담을 통한 지도</p> <p>3) 상담 행정 업무</p>	<p>3) 수련중인 가족상담사(1급, 2급, 3급)에 대한 교육 및 사례지도</p> <p>4) 수련중인 가족상담사(1급, 2급, 3급)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 추천</p> <p>5)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p> <p>6) <u>지부: 가족상담센터의 설립 및 운영</u></p> <p>2. 가족상담전문가 1급: 상담의 전문가(기간인력)이며 독자적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p>1) 가족상담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p> <p>2) 가족상담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p> <p>3) 해당 전문영역에서 가족상담사 및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p> <p>4)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p> <p>5) <u>지부: 가족상담센터의 설립 및 운영</u></p> <p>3. 가족상담사 2급: 가족상담사 상담의 기본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족상담전문가(수련감독, 1급)의 지도하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p> <p>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심리상담을 통한 지도</p> <p>3) 상담 행정 업무</p> <p>3. 가족상담사 3급: 가족상담사 상담의 기본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족상담전문가(수련감독, 1급)의 지도 하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보조</p> <p>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보조</p> <p>3) 상담 행정 업무</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자격 등록 및 갱신</p> <p>제15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자격 등록 및 갱신</p> <p>제15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p>

<p>의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2. 자격증은 본 협회장이 발급한다.</p> <p>제16조 (자격 등록)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일 주일 이내에 당 해 년에 발급한 자격을 일괄 등록 한다.</p> <p>제17조 (자격의 갱신) 가족상담사는 취득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한국가족상담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p>	<p>의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2. 자격증은 본 협회장이 발급한다.</p> <p>제16조 (자격 등록)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일 주일 이내에 당 해 년에 발급한 자격을 일괄 등록 한다.</p> <p>제17조 (자격의 갱신) 가족상담사는 취득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한국가족상담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자격의 유지 및 제한</p> <p>제18조 (가족상담사 자격 유지) 1. 가족상담사(수련감독):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 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그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1회 이상 본 협회가 주관하는 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 3) 상담사례 수련감독 활동과 상담교육,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연 1회 이상 가족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p> <p>2. 가족상담사(1급):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 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내용은 가족상담사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그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2회 이상 본 협회가 주관하는 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 3) 상담교육,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연 1회 이상 가족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자격의 유지 및 제한</p> <p>제18조 (가족상담사 자격 유지) 1. 가족상담전문가(수련감독):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 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이 차기 년도부터 정지된다.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1회 이상 본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 3) 상담사례 수련감독 활동과 상담교육,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매 2년간 2회 이상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p> <p>2. 가족상담전문가(1급):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 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가족상담전문가 1급으로서의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된다.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1회 이상 본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 3) 상담교육,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매 2년간 2회 이상 가족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p> <p>3. 가족상담사(2급):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p>

<p>3. 가족상담사(2급):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 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내용은 가족상담사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그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2회 이상 본 협회가 주관하는 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 3)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연 1회 이상 가족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 <p>4. 가족상담사(3급):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 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내용은 가족상담사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그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2회 이상 본 협회가 주관하는 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 3)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연 1회 이상 가족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 <p>제19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본 협회로부터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 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p> <p>제20조 (자격의 제한) 자격 취득 후에 위의 제12, 13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가족상담사 수련감독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에 실시한 수련감독은 인정치 않는다. 단,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2. 가족상담사 1급: 가족상담사 1급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수련과정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단,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회복 및 수련과정으로 인정된다. 	<p>이행해야 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가족상담사 2급으로서의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1회 이상 본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 3)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매 2년간 2회 이상 가족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 <p>4. 가족상담사(3급):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 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가족상담사 3급으로서의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1회 이상 본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 3)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매 2년간 2회 이상 가족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 <p>제19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본 협회로부터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 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p> <p>제20조 (자격의 제한) 자격 취득 후에 위의 제12, 13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단, 본 협회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2. 가족상담사 1급: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단, 본 협회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의 회복은 회
--	--

<p>3. 가족상담사 2급: 가족상담사 2급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가족상담사 1급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회복 및 수련과정으로 인정된다.</p> <p>4. 가족상담사 3급: 가족상담사 2급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가족상담사 1급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회복 및 수련과정으로 인정된다.</p>	<p>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p> <p>3. 가족상담사 2급: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당해년도부터 회복된다. 단, 정지된 기간의 수련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p> <p>4. 가족상담사 3급: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당해년도부터 회복된다. 단, 정지된 기간의 수련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기타</p> <p>제21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변경은 본 협회에서 행한다.</p> <p>부 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기타</p> <p>제21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변경은 본 협회에서 행한다.</p> <p>부 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사 자격규정" 제8조에 명시된 가족상담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수련과정) 수련과정은 상급 상담전문가의 지도하에 수련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수련감독을 받는</p>	<p style="text-align: center;">(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사 자격규정" 제8조에 명시된 가족상담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수련과정) 수련과정은 상급 상담전문가의 지도하에 수련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수련감독을 받는</p>

<p>것을 말한다.</p> <p>제3조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를 의미한다.</p> <p>제4조 (수련기관) 수련기관은 상담, 교육 영역의 관련기관으로서 본 협회가 수련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것을 말한다.</p> <p>제3조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가 수련감독자를 의미한다.</p> <p>제4조 (수련기관) 수련기관은 상담, 교육 영역의 관련기관으로서 본 협회가 수련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수련과정</p> <p>제5조 (가족상담사 수련과정 및 내용)</p> <p>1.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다음의 수련과정 내용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p> <p>1) 수련감독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 400시간 이상 가족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p> <p>2)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을 1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중 개인 지도감독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때 개인 지도감독은 1인의 수련감독자에게 1~3인의 수련생이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며, 집단 지도감독은 4~10명의 수련생이 지도감독 받는 것을 의미한다.</p> <p>3) 본 협회가 인정하는 집단상담 중, 5개 이상의 집단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때, 2개 집단은 수련감독자가 인도하는 가족관련 집단이어야 하고, 각 집단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4) 수련감독자로부터 개인상담을 5회 이상 받아야 한다.</p> <p>5)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사례발표회에 2회 이상 사례발표를 하고, 발표를 포함하여 8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p> <p>6) 가족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3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상담실습시간, 가족상담사례, 지도감독, 집단상담 시간은 누적하여 진급 심사에 제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수련과정</p> <p>제5조 (가족상담사 수련과정 및 내용)</p> <p>1.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다음의 수련과정 내용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p> <p>1) 수련감독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 <u>1000시간</u> 이상 상담을 실시(상담자경험)해야 한다. 이때, <u>100시간 이상은 가족/부부/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어야 한다.</u></p> <p>2)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슈퍼비전)을 <u>220시간</u> 이상 받아야 한다. 이 중 개인 지도감독을 <u>80시간</u> 이상 받아야 한다. 이때, 개인 지도감독은 1인의 수련감독자에게 <u>1인의 수련생이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u>며, 집단 지도감독은 <u>2~10명의 수련생이 지도감독 받는 것을 의미한다.</u></p> <p>3) 본 협회가 인정하는 집단상담 중 수련감독자가 인도하는 5개 이상의 집단에 참여해야 하고 <u>본 협회의 인증을 받아 1개 이상의 집단을 인도하여야 한다.</u> 각 집단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4) 수련감독자로부터 상담(내담자 경험)을 <u>10시간</u> 이상 받아야 한다.</p> <p>5)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통합상담사례발표회에서 <u>1회 이상 상담사례를 발표</u>하고 발표를 포함하여 <u>5회 이상 참석</u>해야 한다. 또한 협회의 분과학회 및 지부에서 실시하는 <u>상담사례발표회에 2회 이상 상담사례 발표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참석</u>해야 한다.</p> <p>6) 집단연수회에 3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p> <p>7) <u>국외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특별전형 대상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되는 결혼과 가족치료전문가(MFT)자격증을 응시기준으로 한다.</u></p> <p>8) <u>국외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특별전형 대상자는 자격검정응시 전 협회에서 주최하는 통합상담사례발</u></p>

	<p><u>표회에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u></p> <p>9) 매년 수련감독모임에 참석하여야 하며 연속 2회 이상 불참시 자격이 정지된다.</p> <p>※상담현장실습시간, 상담자경험, 슈퍼비전, 집단상담 시간은 누적하여 진급 심사에 제출할 수 있다.</p>
<p>2. 가족상담사 1급: 다음의 수련과정 내용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p> <p>1)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 혹은 상담교육 기관에서 200시간(주 평균 8시간 이상) 이상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2) 수련감독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 200시간 이상의 가족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p> <p>3)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을 5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중 개인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때 개인 지도감독은 1인의 수련 감독자에게 1~3인의 수련생이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며, 집단 지도감독은 4~10명의 수련생이 지도감독 받는 것을 의미한다.</p> <p>4) 본 협회가 인정하는 집단상담 중, 3개 이상의 집단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때, 2개 집단은 수련감독자가 인도하는 가족관련 집단이어야 하고, 각 집단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5) 수련감독자로부터 개인상담을 5회 이상 받아야 한다.</p> <p>6)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사례발표회에 1회 이상 사례발표하고, 발표를 포함하여 4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p> <p>7) 가족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p> <p>※ 상담실습시간, 가족상담사례, 지도감독, 집단상담 시간은 누적하여 진급 심사에 제출할 수 있다.</p>	<p>2. 가족상담사 1급: 다음의 수련과정 내용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p> <p>1) 수련감독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 <u>500시간 이상의 상담을 실시(상담자경험)해야 한다. 이때, 50시간 이상은 가족/부부/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어야 한다.</u></p> <p>2)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슈퍼비전)을 5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중 개인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때, 개인 지도감독은 1인의 수련감독자에게 <u>1인의 수련생이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며, 집단 지도감독은 2~10명의 수련생이 지도감독 받는 것을 의미한다.</u></p> <p>3) 본 협회가 인정하는 집단상담 중 수련감독자가 인도하는 3개 이상의 집단에 참여해야 한다. 각 집단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4) 수련감독자로부터 상담(내담자 경험)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p> <p>5)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u>통합상담사례발표회에 3회 이상 참석해야한다.</u> 또한 협회의 분과학회 및 지부에서 실시하는 <u>상담사례발표회에 1회 이상 사례발표를 포함하여 5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u></p> <p>7) 집단연수회에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p> <p>※상담현장실습, 상담자경험, 슈퍼비전, 집단상담 시간은 누적하여 진급 심사에 제출할 수 있다.</p>
<p>3. 가족상담사 2급: 다음의 수련과정 내용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p> <p>1)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 혹은 상담교육 기관에서 150시간(주 평균 8시간 이상) 이상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2) 수련감독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 20시간 이상의 가족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p> <p>3)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을 12시간 이상 받아야</p>	<p>3. 가족상담사 2급: 다음의 수련과정 내용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p> <p>1)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 혹은 상담교육 기관에서 150시간(주 평균 8시간 이상) 이상 상담현장실습을 수행해야 한다. 상담현장실습이란 상담자 경험을 제외한 상담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말한다.</p> <p>2) 수련감독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 20시간 이상의 상담을 실시(상담자경험)하여야 한다. 이때, 2시</p>

<p>한다.</p> <p>4) 본 협회가 인정하는 집단상담 중, 1개 이상의 집단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때, 집단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5) 상담전문가로부터 개인 상담을 5회 이상 받아야 한다.</p> <p>6)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사례발표회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p> <p>7) 가족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p>	<p>간 이상은 가족/부부/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어야 한다.</p> <p>3) 본 협회가 인정하는 집단상담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각 집단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3)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슈퍼비전)을 1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p> <p>4)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통합상담사례발표회에 2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또한 협회의 분과학회 및 지부에서 실시하는 상담사례발표회에 2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p> <p>5)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또는 1급으로부터 상담(내담자 경험)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p> <p>6) 집단연수회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p> <p>※상담현장실습, 상담자경험, 슈퍼비전, 집단상담 시간은 누적하여 진급 심사에 제출할 수 있다.</p>
<p>3. 가족상담사 3급: 다음의 수련과정 내용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p> <p>1)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 혹은 상담교육기관에서 10시간 이상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는 10시간 이상의 상담사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2) 수련감독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 10시간 이상의 가족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p> <p>3) 상담전문가로부터 개인 상담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p> <p>4)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사례발표회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p> <p>5) 가족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p>	<p>3. 가족상담사 3급: 다음의 수련과정 내용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p> <p>1) 본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 혹은 상담교육기관에서 100시간(주 평균 8시간 이상) 이상 상담현장실습을 수행해야 한다. 상담현장실습이란 상담자 경험을 제외한 상담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말한다.</p> <p>2) 수련감독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 10시간 이상의 상담을 실시(상담자경험)하거나 상담(내담자 경험) 또는 지도감독(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p> <p>3) 본 협회가 인정하는 집단상담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각 집단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4)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통합상담사례발표회에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또한 협회의 분과학회 및 지부에서 실시하는 상담사례발표회에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p> <p>5) 가족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p> <p>※상담현장실습, 상담자경험, 슈퍼비전, 집단상담 시간은 누적하여 진급 심사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6조 (지도감독)</p> <p>1. 제5조의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 기간 중 1/2 이상은 본 협회의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p> <p>2. 지도감독을 받을 때, 한 수련감독자에게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도감독은 일주일</p>	<p>제6조 (지도감독: 슈퍼비전)</p> <p>1. 제5조의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을 받을 때, 한 수련감독자에게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도감독은 일주일에 3시간까지만 인정된다.</p> <p>2. 한 사례를 여러 수련감독자에게서 지도감독 받을</p>

<p>에 3시간까지만 인정된다.</p> <p>3. 한 사례를 여러 수련감독자에게서 지도감독 받을 경우, 한 수련감독자에게서 받은 지도감독만 인정된다.</p> <p>4. 가족상담사 수련감독, 1급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2인 이상의 수련감독자에게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각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확인서가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접수되도록 한다.</p>	<p>경우, 한 수련감독자에게서 받은 지도감독만 인정된다.</p> <p>3. <u>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4인 이상의 수련감독자에게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u> 가족상담전문가 1급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2인 이상의 수련감독자에게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u>가족상담사 2급, 3급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1인 이상의 수련감독자에게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u> 각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확인서와 추천서가 자격관리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자격심사 청구</p> <p>제7조 (자격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내용을 구비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1.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p> <p>1) 심사료와 자격심사 응시원서(본 협회 소정 양식)</p> <p>2) 400시간 이상의 가족상담 확인서</p> <p>3) 1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 확인서</p> <p>4) 집단상담 참여 확인서</p> <p>5) 사례발표회 및 집단연수회 참여 확인서</p> <p>6) 내담자 경험 확인서</p> <p>7) 상담관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p> <p>8)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2매</p> <p>9) 2편의 가족상담 공개사례 발표 전문</p> <p>10) 가족상담 5사례를 제출하되, 4사례는 요약본과 2사례 중 1회기 완전 축어록과 수련감독 내용의 요약본을 제출하고, 다른 1회기는 녹음 혹은 녹화 테이프를 제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자격심사 청구</p> <p>제7조 (자격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내용을 구비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1.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p> <p>1) 심사료와 자격심사 응시원서(본 협회 소정 양식)</p> <p>2) <u>1000시간 이상의 상담자 경험 확인서</u></p> <p>3) <u>22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슈퍼비전) 확인서(개인/집단 슈퍼비전 구분)</u></p> <p>4) 집단상담 참여 확인서</p> <p>5) 상담사례발표회 및 집단연수회 참여 확인서</p> <p>6) 내담자 경험 확인서</p> <p>7) 상담관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p> <p>8) <u>연구실적자료(해당자에 한함)</u></p> <p>9)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2매</p> <p>10) 3편의 상담사례발표 전문</p> <p>11) <u>가족상담 3사례를 제출하되 각 사례별 1회기 완전 축어록과 슈퍼비전 내용의 요약본을 제출하고, 해당 회기의 녹음 혹은 녹화 테이프를 제출한다.</u></p>
<p>2. 가족상담전문가 1급</p> <p>1) 심사료와 자격심사 응시원서</p> <p>2) 200시간 가족상담 실시 확인서</p> <p>3) 55시간 이상의 지도감독 확인서</p> <p>4) 200시간 이상의 상담실습 확인서</p> <p>5) 집단상담 참여 확인서</p> <p>6) 사례발표회 및 집단연수회 참여 확인서</p> <p>7) 내담자 경험 확인서</p> <p>8) 상담관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p>	<p>2. 가족상담전문가 1급</p> <p>1) 심사료와 자격심사 응시원서</p> <p>2) <u>500시간 상담자 경험 확인서</u></p> <p>3) 55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슈퍼비전) 확인서(개인/집단 슈퍼비전 구분)</p> <p>4) 집단상담 참여 확인서</p> <p>5) 상담사례발표회 및 집단연수회 참여 확인서</p> <p>6) 내담자 경험 확인서</p> <p>7) 상담관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p>

<p>한함)</p> <p>9)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2매</p> <p>10) 1편의 가족상담 공개사례발표 전문</p> <p>11) 가족상담 3사례를 제출하되 4사례는 요약본을 제출하고 1사례는 요약본과 그 사례 중 1회기 완전 축어록과 다른 1회기 녹음 혹은 녹화 테이프를 제출한다.</p>	<p>한함)</p> <p>8)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2매</p> <p>9) 1편의 상담사례발표 전문</p> <p>10) 가족상담 1사례를 제출하되 1회기 완전 축어록과 슈퍼비전 내용의 요약본을 제출하고, 해당 회기의 녹음 혹은 녹화 테이프를 제출한다.</p>
<p>3. 가족상담사 2급</p> <p>1) 심사료와 자격심사 응시원서</p> <p>2) 20시간 가족상담 실시 확인서</p> <p>3) 12시간 이상의 지도감독 확인서</p> <p>4) 150시간 이상의 상담실습 확인서</p> <p>5) 집단상담 참여 확인서</p> <p>6) 사례발표회 및 집단연수회 참여 확인서</p> <p>7) 내담자 경험 확인서</p> <p>8) 상담관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p> <p>9)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2매</p>	<p>3. 가족상담사 2급</p> <p>1) 심사료와 자격심사 응시원서</p> <p>2) 20시간 상담자 경험 확인서</p> <p>3) 12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슈퍼비전) 확인서</p> <p>4) 150시간 이상의 상담현장실습 확인서</p> <p>5) 집단상담 참여 확인서</p> <p>6) 상담사례발표회 및 집단연수회 참여 확인서</p> <p>7) 내담자 경험 확인서</p> <p>8) 상담관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p> <p>9)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2매</p>
<p>3. 가족상담사 3급</p> <p>1) 심사료와 자격심사 응시원서</p> <p>2)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 확인서</p> <p>3) 10시간 이상의 상담사례 또는 상담실습 확인서</p> <p>4) 사례발표회 및 집단연수회 참여 확인서</p> <p>5) 내담자 경험 확인서</p> <p>6) 상담관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p> <p>7)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2매</p>	<p>3. 가족상담사 3급</p> <p>1) 심사료와 자격심사 응시원서</p> <p>2) 10시간 이상의 상담자·내담자경험 확인서 또는 지도감독(슈퍼비전) 확인서</p> <p>3) 100시간 이상의 상담현장실습 확인서</p> <p>4) 집단상담 참여 확인서</p> <p>5) 상담사례발표회 및 집단연수회 참여 확인서</p> <p>6) 상담관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p> <p>7)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2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기타</p> <p>제8조(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p> <p>부 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기타</p> <p>제8조(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p> <p>부 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